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7.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12월 5일, 안호영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5년 12월 8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6. 3. 24.)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2026. 4. 1.) 상정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2026. 4. 15.) 상정, 축조심사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2026. 4. 22.) 상정

제435회 국회(임시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2026. 5. 19.)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435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6. 5. 19.)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안호영의원)

현행법은 송·배전사업자에게 전기공급 및 계통접속 과정에서 “차별 없는 이용 제공”을 의무화하고 있어, 전기사업자 간 접속 경쟁은 기본적으로 선착순 원칙에 따라 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구조는 지역 균형발전과 주민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과 같이 공공성이 높은 사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어, 민간 영리 목적의 일반 사업자와 구분 없이 계통 접속 대기열에서 장기간 대기해야 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 특히 계통 용량이 제한된 지역에서는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이 민간 사업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경쟁해야 하므로, 공익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지연되거나 추진이 불가능해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는 현행 법 체계가 공동체형 분산전원의 정책적 필요성과 공공적 성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음. 이에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공공적 성격을 가진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하여는 계통 접속 과정에서 선착순 원칙의 예외를 허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한정된 계통자원을 주민참여·공공성 기준에 따라 우선 접속·배분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내 에너지소득 환류, 지역경제 활성화, 분산전원 확대 등

국가의 정책 목표를 실질적으로 달성하고자 함(안 제20조 및 제4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개정안은 현행 전력망 이용의 '차별 금지(선착순 접속) 원칙'에 예외를 두어, 지역균형발전과 주민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마을공동체 등 공익적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전력망 우선 접속을 허용하고, 계통안정화 설비를 갖춘 경우 발전사업 허가기준을 일부 완화하려는 것으로, 전력계통 포화 지역에서 겪고 있는 접속 지연 문제를 해소하여 소규모 분산전원 확대를 위한 지역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에너지 정책의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음.

다만, 특정 사업자에게 전력망 우선 이용 특례를 부여하는 것은 선착순 원칙을 신뢰하고 대기 중이던 기존 사업자의 접속 지연 및 재산권 침해 우려를 낳을 수 있고, 일반 사업자가 혜택을 받기 위해 위장공동체를 구성하는 등 제도를 악용할 소지가 존재함. 따라서 입법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하위 법령에 우선 접속 대상(용량 제한 등)과 엄격한 주민 참여 요건을 명확히 위임할 필요가 있으며, 각 개정안 간의 조문 신설 방식 및 전력거래소 운영 특례 조항의 중복성 등에 대하여 법체계적 정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음.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김형동)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6.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

7. 기타 사항

없 음